AgEcon SEARCH
RESEARCH IN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The World's Largest Open Access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Digital Library

This document is discoverable and free to researchers across the globe due to the work of AgEcon Search.

Help ensure our sustainability.

Give to AgEcon Search

AgEcon Search
http://ageconsearch.umn.edu
aesearch@umn.edu

*Papers downloaded from **AgEcon Search** may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personal study only. No other use, including posting to another Internet site, is per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 (not AgEcon Search), or as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Fair Use, U.S. Copyright Act, Title 17 U.S.C.*

연구 자료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FTA 농산물 양허안 분석

어 명 근* 이 현 주** 강 혜 정***

Key words: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농산물양허안, 표준소요량(Standard Recipes)

ABSTRACT

EFTA(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firmly advocates open economic policies and established several FTAs with many other countries though it has relatively low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In principle, EFTA excludes agricultural products from tariff concessions in the main text of FTA agreements. Only non-agricultural products are included in the main agreements. Concessions for the agricultural products are dealt with in the separate bilateral agricultural agreements between individual member countries and FTA partner. Concessions for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are provided both in the main agreement and bilateral agricultural agreement.

Switzerland and Norway representing EFTA have increased the magnitude of their agricultural concessions in recent FTA negotiations but their overall levels of concessions are still very low. In addition, some product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concessions because such products are so sensitive to domestic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While the EFTA does allow concess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the process is fairly unique and complicate. It employs various concession rates and specific tariffs as well as quantity restrictions. Furthermore, it allows price compensation system using external reference prices and standard recipes for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Korea, having relatively low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like the EFTA, needs to establish FTA strategies referring to the EFTA's methods in order to successfully complete a number of FTA negotiations in the near future.

1. 머리말
2. EFTA의 경제와 농업 개황
3. EFTA의 무역 정책과 FTA 추진 방식
4. EFTA의 FTA 농산물 양허안 분석
5. 맺음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 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 초청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원.

1. 머리말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여러 나라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여 2004년 11월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고 일본과의 FTA 협상도 6차례나 진행하였다. 2005년 1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공식 협상에 착수하여 6월 현재 3차 협상을 완료하였다. 그 밖에 ASEAN과의 FTA 협상도 세 차례 진행 중이고 2005년 중에 캐나다와 인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여러 나라와 동시 다발적으로 FTA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FTA는 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된다. EFTA는 일인당 국민소득과 일인당 수출액이 세계 최상위권이면서도 농업 경쟁력이 낮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요시하여 막대한 농업보조를 지출하고 있다. 또한 칠레, 멕시코, 싱가포르와 더불어 세계적인 FTA의 허브로 간주될 만큼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불리한 농업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FTA를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EFTA의 비농업 부문의 시장을 배경으로 독특한 FTA 농산물 양허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FTA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FTA 본 협정문에서는 비농산물만을 양허하고 있으며 농산물 양허 문제는 FTA 본 협정이 아닌 개별 회원국과 FTA 상대국간 별도의 양자 간 농업협정을 통하여 논의함으로써 EFTA가 지닌 농업의 취약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 취약부문으로서 협상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EFTA는 우리나라의 관심품목인 쌀을 전혀 생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선농산물의 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어 EFTA와의 FTA 체결 협상에서는 농업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불리한 농업환경 속에서도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FTA의 추진 방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처럼 농업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EFTA의 농업 통상 정책 가운데 FTA 추진 방식 또는 농산물 양허 전략을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FTA 농업 부문 협상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와 EFTA간 FTA 체결과 관련된 연구 또는 우리나라와 EFTA간 농산물 교역 및 농업 부문의 FTA와 관련된 연구는 한·EFTA FTA 공동 연구에 착수한 2004년 이전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양국 간 공동 연구에서 정재화(2004)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스위스의 2003년 현재 관세율이 100kg당 100 스위스 프랑(CHF)을 넘는 고관세 품목 비율이 전체 8,482개 품목의 21%나 되는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EFTA의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인 직물류와

귀금속 제품, 조제식품에 대한 관세율은 높아 FTA 체결시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송영관(2004)은 CGE 모형에 의한 EFTA와의 FTA 체결 효과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GDP가 단기적으로 0.02%, 중기적으로 0.05% 증가하며 수출은 연간 약 6억 달러, 수입은 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FTA 체결의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나 선진국과의 첫 번째 FTA이고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유입 등 잠재적 효과를 고려하면 FTA 체결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어명근 외(2004)는 한국과 EFTA의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입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입 증대 효과를 계측하였다. EFTA와의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의 스위스산 농산물 수입은 약 10.1% 증가하고 노르웨이산 농산물 수입은 약 17%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스위스 농산물 수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으며 노르웨이로의 수출은 약 19.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수출입 수요함수에 의한 FTA 영향 추정 방식은 현행 수출입이 있는 품목만 계측 대상이 되어 FTA 파급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2. EFTA의 경제와 농업 개황

2002년 EFTA의 인구는 1,220만 명에 불과하지만 스위스를 제외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국은 EU와 함께 유럽 경제지대(EEA)의 회원국으로서 28개 국가의 소비자 4억 5천만 명을 지닌 세계 최대의 지역 통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EFTA의 국내총생산(GDP)은 4,676억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지만 일인당 GDP는 39,200 달러로 우리나라의 네 배 가까이 된다. EFTA의 총수출액은 약 1,500억 달러로 일인당 수출액으로 환산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약 12,300 달러에 달한다. 수입총액은 1,21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EFTA의 농경지 면적은 2002년 당시 약 132만 헥타르로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8%에 불과하다. 국별 농경지 면적은 스위스가 약 44만 헥타르로 국토 면적의 11%, 노르웨이는 88만 헥타르로 전체 국토의 2.7%,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전 국토의 0.1%에 불과한 7천 헥타르였다. 농가인구는 약 6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스위스가 44만 명, 노르웨이 22만 명, 아이슬란드는 2만 4천 명이었다.

농업 부문 GDP는 전체 GDP의 약 1.7%인 80억 달러이며 농업 생산액의 국가별 비중은 스위스 1.6%, 노르웨이 2%, 아이슬란드 9.8%였다. 농가인구 일인당 평균 GDP는 11,500 달러였으며 가구당 농가소득은 스위스가 약 50,400 달러, 농업취업자 일인당 소득은 약 39,400 달러에 달하였다.

2002년 EFTA의 농산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1.9%인 28.3억 달러, 농산물 수입액은 75.3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2%를

표 1. EFTA 경제 개황, 2003

구분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EFTA	한국
GDP(십억 달러)	320.1	220.9	10.5	551.5	605.3
-농업 부문 GDP비중(%)	1.6*	1	9.8*	1.7*	3
인구(천명)	7,171	4,514	290	11,992	47,925
-농가인구와 비중(%)	444(6.2)	222(4.9)	23.7(8.2)	689(5.7)	3,594(7.5)
국토면적(천ha)	4,129	32,388	10,300	46,817	9,959
-경지면적과 비중(%)	436(11)	880(2.7)	7(0.1)	1,323(2.8)	1,863(18.7)
수출액(억 달러)	1,006.5	679.1	23.7	1,709.3	1,937.4
-농산물수출액과 비중(%)	27.5(2.7)	5.4(0.8)	0.4(1.7)	33.3(1.9)	19.0(1.0)
수입액(억 달러)	964.2	398.3	28.1	1,390.6	1,787.5
-농산물수입액과 비중(%)	61.9(6.4)	26.6(6.7)	2.5(8.9)	91(6.5)	96.6(5.4)

* 2002년 자료임.
자료: FAOSTAT Data Base
World Bank 및 ITC
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2004년.

차지하였다. 그 결과 EFTA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47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EFTA 농업의 무역의존도(농업 부문 GDP에 대한 농산물 무역액)는 1.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FTA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여건에서도 국가별, 품목별 차이는 있지만 가능한 한 필수 농산물은 자급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육류와 낙농품은 회원국 모두 완전 자급 또는 수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국내 생산을 유지하여 소비를 충족시키고 있다.

EFTA 회원국들이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농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수립, 추진되는 정부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식품 안보와 환경보존, 농촌의 경관 유지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불 등 정책 집행에 따라 주요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수급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3. EFTA의 무역 정책과 FTA 추진 방식

EFTA가 역외국과 FTA를 체결하는 목적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유럽 및 다른 지역과의 통합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최근 EFTA의 FTA 정책 조류는 전 세계적으로 FTA 연결망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FTA 대상 범위에 서비스와 투자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심화되고 있다. FTA 추진 대상국의 지리적 범위가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되는 한편 FTA 대상 영역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FTA의 무역 정책은 회원국 간 내부적인 무역 관계를 규정한 EFTA 협약(Convention), EU와의 무역 관계에 관한 유럽 경제지대

(EEA) 협정(Agreement), 그리고 제3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세 가지 틀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2004년 4월까지 EFTA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20개국이었으나 2004년 5월 EU의 확대로 동부유럽 일곱 개 국가들이 EEA로 흡수되면서 13개국으로 줄었다. EFTA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인 EU는 매년 EFTA 전체 수출입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교역대상국은 미국으로 연평균 전체 교역액의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3개 FTA 대상국 및 일본과 전체 교역액의 각각 3%씩을 거래하고 있다. 그 밖에 중국과 캐나다는 각각 2%, 우리나라와 홍콩은 각 1%씩을 차지하고 있다.

EFTA 국가들의 농업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FTA 추진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EFTA의 FTA 추진 방식의 첫 번째 특징은 농산물은 무역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FTA의 모든 FTA 협정 양허안에는 비농산물(HS-부호 25부터 99까지)만이 포함되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도 농산물은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될 때까지 자유화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EFTA는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본격화된 WTO 체제의 출범에 때맞추어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국이 1995년 EU와 유럽 경제지대(EEA)를 결성하면서 농산물을 부분적으로 무역자유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EFTA의 FTA 추진 정책의 두 번째 특징은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한 내용은 EFTA 개별회원국과 FTA 상대국이 체결하는 별도의 양자 간 농업협정을 통하여 논의함으로써 회원국별 농업의 취약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개별회원국별로 별도의 농업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EU와 달리 역내국간 공동농업정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약품목에 대하여 특별 취급이 필요한 이유는 EFTA 회원국의 열악한 영농 조건으로 인하여 EU나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부분 농산물의 생산비가 높아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EFTA가 체결하는 FTA의 또 다른 특징은 농산물을 기본농산물과 가공농산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농산물은 원칙적으로 FTA의 양허 대상이 아니며 가공농산물은 예외적으로 양허 대상에 포함되지만 가공 과정에 포함된 공산품 부분(industrial elements)을 제외한 농산물 부분(agricultural elements)의 가액은 관세철폐의 대상이 아니며 가격보상 대상이 되어 수입관세 부과 또는 수출환급이 허용되고 있다.

4. EFTA의 FTA 농산물 양허안 분석

EFTA는 현재 13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FTA는 최대 교역 대상국인 EU와의 FTA라 할 수 있

다. EFTA는 EU와 두 가지 연결망으로 교역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는 스위스가 1972년 EU와 체결한 FTA이며 다른 하나는 1995년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국과 EU가 창설한 유럽 경제지대(EEA)이다. EFTA가 역외국과 체결한 대부분 FTA 협정에서 기본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의 구분, 양허방식과 가격보상제도 등 기본 골격은 EU와의 FTA 협정을 모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EFTA의 핵심 회원국인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EU와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농산물 양허 방식을 분석하고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양허한 내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4.1. 스위스의 FTA 농산물 양허안

4.1.1. 스위스와 EU간 FTA

스위스는 1972년 당시 유럽 경제공동체(EEC)와 FTA를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목적은 EFTA와 EEC간 공산품 분야의 포괄적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데 있었다. EU와의 FTA는 그때까지 EFTA 회원국이었던 영국과 덴마크가 대형 관세동맹인 EEC에 가입하기 위해 EFTA를 탈퇴한 후 체결되어 일종의 정치적 부산물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EFTA와 EU간 교역관계를 이루는 양대 교량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스위스와 EU간 FTA 협정은 표준상품분류(HS) 부호 25류부터 99류까지의 공산품만을 관세 양허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은 제외되었다(협정문 제2조). 다만 가공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인 공산품과 관세철폐 예외 품목인 농산물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므로 FTA 협정의 제2 의정서(Protocol 2)에 세부적인 관세 양허 방식을 규정하였다. 가공농산물 생산에 투입된 공산품 부분에 대한 관세는 1977년 7월 1일까지 점진적으로 철폐되었다.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사항은 스위스와 EU간 별도의 양자 간 농업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스위스와 EU는 1999년 제1 양자간 협정(Bilaterals Ⅰ)에 농업협정을 포함시켰다. EU와의 농업협정은 HS 부호 1류부터 24류까지의 농산물에 대한 양측의 관세 양허안(부록 1과 부록 2)과 상호 관심품목인 치즈 양허계획(부록 3)을 포함하고 있다. 스위스는 국내 생산이 중단된 겨울철에 EU산 과일 및 채소류와 국내 생산이 없는 품목 또는 올리브유처럼 생산량이 미미한 품목 등 기본농산물 89개(HS-8 단위 기준)를 양허하였다. EU도 과일과 채소 등 일부 스위스산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였다. 양허 품목 가운데 관세 철폐 대상 품목은 70개에 달하지만 한정된 물량(쿼터)만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이 11개나 되어 실제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59개에 불과하였다.

스위스는 EU와의 농업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양국 간 치즈류 무역을 완전 자유화한다는 합의에 따라 20개 품목의 EU산 치즈를 양허하였다. 그러나 치즈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스위스는 치즈무역 자유화 조치로 인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양측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감축 및 철폐와 함께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동식물 검역과 농약, 생명과학 및 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품질 기준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상호 인정을 확대하였다.

한편 가공농산물 교역에 대해 스위스와 EU는 시장 접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1988년 11월과 2000년 3월 개정안을 통하여 FTA 협정문의 제2 의정서를 수정함으로써 가격보상제도를 개선하고 관세 감축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 특히 2004년 제2 양자 간 협정(Bilaterals Ⅱ)을 체결하면서 "순가격보상(net price compensation)" 개념을 도입하여 가격보상제도를 실질적으로 단순화하였다. 국내외 가격 차 산정시 참조가격(reference price)을 세계 가격에서 EU 가격으로 대체함으로써 양자 간 가격 차이를 대폭 축소하였다. EU는 스위스의 국내 가격이 더 높은 가공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수출보조금을 완전 철폐하하였으며 스위스도 EU산 가공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수출보조를 감축하였다.

제2 양자 간 협정에서 스위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EU에 가공농산물을 양허하였다. 먼저 양허 대상 농산물(products subject to price compensation measures)을 지정하고 품목별 원료농산물(agricultural raw material)의 표준소요량(standard recipes)과 단위당 국내외 가격 차액인 기본가액(basic amount)을 제시한 뒤 협정 발효 3년 후의 기본가액을 인하함으로써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이다[1]. 양허 대상 가공농산물은 요구르트와 초콜릿, 비스킷, 수프, 소스류, 파스타, 케이크, 반죽류, 아이스크림 등 HS-8 단위 기준 181개 품목이다. 원료농산물은 곡물류와 밀가루, 분유, 달걀, 감자 및 식물성 유지류 등 "1974년의 연방농산물수출입법(Schoggigesetz)"에 명시된 13개이다. 스위스 국내 가격과 EU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원료농산물 기본가액은 <표 2>와 같이 발효 3년 후 감축률이 3~8%로 낮아 실질적인 관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보리와 옥수수, 버터, 달걀, 감자 등은 협정 발효 3년 후에도 기본가액을 전혀 인하하지 않아 사실상 양허하지 않았다.

스위스가 EU에 가공농산물을 양허한 두 번째 방식은 무역자유화 품목(Free-trade products)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스위스 국내 생산량이 미미한 품목들로서 HS-4 단위 기준 49개였다(부표 1). 부류별로는 동물성 생산품(5류), 동식물성 유지류(15류)와 음료 및 주류(22류), 채소 및 과일조제품(20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스위스는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EU산 가공농산물 15개(HS-8 단위 기준)의 관세를 철폐하였다(부표 2). 이들 품목 가운데 13개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 2개는 협정 발효 후 3년간 균등 감축하여 철폐한다. 부류별로는 곡물조제품(19류)과

[1] 표준 소요량은 Council of European Union (2004) <표 4>의 부록에 매트릭스 형식으로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특정 가공농산물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는 원료 농산물 품목별 표준 소요량에 기본가액을 곱한 액수를 매트릭스에 나타난 투입 품목에 대해 모두 합한 금액임.

표 2. 스위스의 국내외 가격 차와 수입계획(2002. 1. 1. 가격)

(단위: 스위스 프랑(CHF)/100kg)

원료농산물	스위스 국내 가격	EU 가격	협정 발효시 기본가액	발효 3년 후 기본가액	감축률(%)
일반 밀	64.00	19.45	40.0	38.0	5.0
듀럼 밀	43.22	28.46	13.0	12.0	7.7
호밀	58.00	15.98	37.0	36.0	2.7
보리	32.46	11.81	18.0	18.0	0
옥수수	38.97	18.87	18.0	18.0	0
일반 밀가루	105.88	27.23	70.0	67.0	4.3
전지분유	607.00	382.77	201.0	191.0	5.0
탈지분유	481.04	295.49	167.0	158.0	5.4
버터	922.00	455.20	466.0	466.0	0
설탕(HS-1701/03)	-	-	0	0	0
달걀	250.75	186.7	36.0	36.0	0
신선감자	42.00	21.14	18.0	18.0	0
식물성 유지류	360.00	147.25	191.0	181.0	5.2

주 1: 설탕은 스위스 가격이 EU 가격보다 낮아 기본가액이 0으로 나타났음.

자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4) 부록 2의 <Table 3>과 <Table 4(b)>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소스류(21류), 음료 및 주류(22류) 등이다.

또한 커피와 커피추출물, 잼류, 광천수, 청량음료, 주류와 같이 "1974년 연방농산물 수출입법"에 규정된 원료농산물을 함유하지 않은 가공농산물이나 단순히 설탕만 함유한 품목은 관세를 완전 철폐하거나 수출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스위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무역자유화 조치를 포함한 EU와의 제2 양자 간 협정 발효 이후에도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출보조를 유지하고 있다.

4.1.2. 스위스의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안 비교

스위스는 1999년 제1 양자 간 협정과 2004년 제2 양자 간 협정을 통하여 기본농산물 109개와 가공농산물 264개 등 모두 373개의 농산물을 EU에 양허하였다. WTO에 양허한 농산물 2,251개의 17.9%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욱이 관세 철폐 대상 품목은 한정된 물량만 철폐하는 16개를 포함하여 158개로 더욱 적었다(표 3).

부류별 양허 품목 수는 19류(곡물조제품)가 88개로 가장 많았으며 21류(소스류)가 42개, 20류(채소 및 과실조제품) 35개 순으로 나타났다. 부류별 관세 철폐 품목 수는 6류가 양허 품목 전체인 33개로 가장 많았고 21류가 20개, 20류가 18개였다.

2003년 6월 조인된 칠레와의 FTA에서는 기본농산물 518개와 가공농산물 162개 등 모두 680개를 양허하여 WTO 양허 농산물(2,251개)의 30.2%로 EU보다 높았다. 관세 철폐 품목도 337개로 EU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 품목에 대하여 물량 제

표 3. 스위스의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역

HS-2 단위	대EU FTA		대칠레 FTA		대싱가포르 FTA		비고
	양허품목	무관세품목	양허품목	무관세품목	양허품목	무관세품목	
01			21	13	11	11	
02	3	3(2)	66	11			
04	29	16(5)	7	1	3	1	
05	10	10	14	14	22	22	
06	33	33	20	11	3	3	
07	13	12(4)	167	86	24	23	
08	11	11(3)	85	67	41	41	
09	4	4	23	23	21	21	
12	1	1	21	21	19	19	
13	1	1	15	15	13	13	
14	6	6	4	4	8	8	
15	23	7	10	6	8	8	
16			6	0			
17	17	2	16	2	17	3	
18	31	3	23	1	27	5	
19	88	4	67	2	67	2	
20	35	18	45	29	32	23	
21	42	20	41	12	33	8	
22	22	16(2)	24	14	18	10	
23			4	4	11	11	
24			1	1	4	4	
35	4	0					
계	373	158(16)	680	337	382	236	

주 1: 품목 수는 HS-8 단위 기준이지만 HS-4 단위와 6 단위에서 세분되지 않은 품목도 있음. ( )속은 일정 물량만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 수임.

자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4) 및 제2 의정서(Protocol 2).
Complimentary Agreement between Chile and Switzerland(2003)

한 없이 관세를 철폐하기로 양허하였다.

부류별 양허 품목 수는 7류(채소류)가 167개로 가장 많았으며 8류(과일류)가 85개, 19류 67개, 2류(육류) 66개로 그 뒤를 이었다. 관세 철폐 품목 수도 7류가 86개로 가장 많았으며 8류가 67개, 20류 29개 순이었다.

스위스는 2003년 1월 발효된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기본농산물 220개와 가공농산물 162개를 합하여 WTO에 양허한 농산물의 16.9%에 해당하는 382개를 양허하였다. 기본농산물은 전량 관세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가공농산물은 16개를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16개 모두 물량 제한 없이 관세를 철폐하였다.

부류별 양허 품목 수는 19류(곡물조제품)가 67개로 가장 많았고 8류가 41개, 21

류 33개 순이었다. 관세 철폐 품목은 8류가 양허 품목 41개 전부로 가장 많았으며 7류와 20류가 각각 23개, 5류(동물성새산품) 22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위스의 FTA 농산물 양허 내용은 대상국별로 다양하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유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양허 품목 수는 곡물조제품(19류)과 식용채소류(7류), 식용과실류(8류), 그리고 소스류(21류)의 순으로 많았으며 관세 철폐 품목 수는 채소류와 과실류, 채소 및 과실조제품(20류)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곡물류(10류)와 곡분류(11류)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육어류 조제품(16류)과 식물성섬유류(14류), 박류(23류)는 양허 품목이 적었다.

스위스는 FTA를 체결하면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다양하게 농산물을 양허하였지만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의 수입 개방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투자와 서비스 등 새로운 현안을 포함시켰고 농업부문도 기술진보와 경쟁력 변화 등을 감안하여 비교적 큰 폭으로 농산물을 양허하였다. 따라서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도 농산물 양허에 개방적인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 노르웨이의 FTA 농산물 양허안

4.2.1. 노르웨이와 EU간 FTA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 등 EFTA 3국이 1995년 EU와 체결한 유럽경제지대(EEA)의 회원국이다. EU와의 FTA인 EEA 협정에서도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EA 협정 제19조는 회원국들이 개별 농업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기본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FTA 3국이 EU에 농산물을 양허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스위스의 양허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노르웨이와 EU 양측은 농산물 특혜 무역에 관한 조항을 편지 형태로 상호 교환하면서 협정문을 수정, 경신하고 있다. 최근 수정된 내용은 2003년 6월 20일자 “EC와 노르웨이간 농산물 특혜무역에 관한 편지 교환 형태의 협정”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3)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문 부속서 1(Annex 1)은 치즈 무역에 관한 사항으로 노르웨이는 EU에 HS-0406(치즈와 커드)에 속하는 13개 품목을 연간 4천 톤의 쿼터 물량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양허하였다. 또한 노르웨이는 1kg당 4.3 크로네의 종량세가 부과되는 임시저장 체리를 제외한 2류(육류)와 7류(채소류) 등 7개 부류 22개 품목별 쿼터 물량을 무관세 양허하였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6류(산수목)부터 20류(채소 및 과일조제품)까지 6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 철폐 또는 세율 인하로 양허하고 있다.

EEA 협정 제8조 3항(B)은 EFTA와 EU 양측의 가공농산물 관세 양허안과 가격보상제도(price compensation system)를 제3 의정서(Protocol 3)에 규정하고 있다. EEA

의 가격보상제도는 스위스의 경우와 같이 수입 관세 또는 수출보조금을 허용함으로써 EEA 회원국 간 기본농산물 가격 차이를 균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세와 수출보조금은 회원국들이 합의한 참조가격에 의해 산출된다.

노르웨이가 EU에 가공농산물을 양허한 방식은 스위스의 첫 번째 방식과 유사하다. 먼저 선정된 양측의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하여 국별 수입계획(Import Regime)을 제시함으로써 양허안을 제공하고 있다. EEA 회원국의 양허 대상 품목은 낙농품(HS-0403)부터 소비톨 등 화공품(HS-3824)까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HS-4 단위 기준으로 53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노르웨이는 가공농산물에 대한 관세 산정시 사용되는 원료농산물의 품목별 참조단가(reference rates)를 1kg당 노르웨이 크로네(NOK/kg) 형태의 종량세로 나타내고 있다. 가공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밀가루와 전분, 글루코즈 등에 대하여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최소허용량(de minimis)은 5%이다. 또한 곡물 플레이크(HS-19042010)와 야채수프(HS-21041020) 등의 가공에 소요된 원료농산물 가액은 품목별 참조단가에서 7.2% 인하된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표에 제시된 매트릭스 형태의 참조단가와 품목별 표준소요량(standard recipes)을 이용하면 가공농산물에 부과될 관세를 산출할 수 있다.

4.2.2. 노르웨이의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안 비교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하여 EU에 기본농산물 101개와 가공농산물 125개를 합하여 모두 226개를 양허하였다. WTO에 양허한 품목 1,378개의 약 16.4%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관세 철폐 품목 수는 176개로 전체 양허 품목의 77.9%에 달한다. 부류별 양허 품목은 20류(채소 및 과실조제품)가 44개로 가장 많았으며 21류(소스류) 26개, 7류(채소류) 25개에 이어 6류(산수목)가 24개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 철폐 품목도 20류가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21류 21개, 7류 20개, 그리고 6류 17개였다.

노르웨이가 EU에 양허한 많은 품목들은 양허 품목 전체를 관세 철폐하고 있다. 극소수의 품목을 양허하면서 모두 관세 철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4류(낙농품)와 22류(음료 및 주류) 각 13개씩을 비롯하여 5류(동물성 생산품)와 24류(담배) 각 8개, 12류(채유용 종자)와 13류(식물성 수지류) 각 4개, 14류(식물성 섬유류) 5개, 16류(육어류 조제품) 3개, 29류(마니톨과 소르비톨)와 38류(염료조제품류) 각 2개씩 등은 양허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무관세 양허하였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10류(곡물류)와 11류(곡분) 및 12류(채유용 종자)를 EU에 양허하지 않았다. 또한 축산업과 낙농업의 투입재이자 주요 수출품인 사료의 원료가 되는 23류(박류)도 양허하지 않았다.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수출산업 또는 국민 식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양허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칠레에 대하여 기본농산물

299개와 가공농산물 109개 등 모두 408개를 양허하였다. WTO 양허 품목의 29.6%로 EU에 대한 양허율보다 높았다. 관세 철폐 대상 품목은 기본농산물 273개와 가공농산물 59개 등 모두 332개로 역시 EU에 대한 관세 철폐 품목보다 많았다. 부류별 양허 품목 수는 20류가 81개로 가장 많았으며 8류(과일류)가 77개, 7류(채소류) 45개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 철폐 품목 수는 8류가 69개로 가장 많았으며 20류 61개, 7류 36개, 22류 31개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1

표 4. 노르웨이의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역

HS-2 단위	대EU FTA		대칠레 FTA		대싱가포르 FTA		비고
	양허품목	무관세품목	양허품목	무관세품목	양허품목	무관세품목	
01							
02	2	1					
04	13	13	3	0	2	0	
05	8	8	17	17	15	15	
06	24	17	15	15	24	24	
07	25	20	45	36	58	56	
08	15	14	77	69	79	79	
09			19	19	27	27	
10			2	2	11	11	
11			4	4	10	10	
12	4	4	18	18	33	33	
13	4	4	25	22	16	16	
14	5	5	6	6	8	8	
15	11	5	10	5	19	19	
16	3	3					
17	4	2	3	0	15	12	
18	1	1	4	3	6	5	
19	8	5	9	0	12	0	
20	44	26	81	61	61	56	
21	26	21	25	16	14	5	
22	13	13	33	31	27	24	
23					18	18	
24	8	8	5	3	11	11	
29	2	2	2	2	22	22	
33	4	2	1	1	1	1	
35			2	0	8	4	
38	2	2	2	2	8	8	
계	226	176	408	332	505	464	

자료: Annex to the Agreement amending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1995).
Complimentary Agreement on trade in agricultural goods between the Republic of Chile and the Kingdom of Norway(2003).
Agri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Kingdom of Norway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2002)

KREI

류(산동물)와 2류(육류), 16류(육어류 조제품), 23류(박류)등이었다. 또한 4류(낙농품)와 17류(당류), 19류(곡물조제품), 35류(단백질) 등은 관세 철폐 품목이 하나도 없었다. 칠레에 대하여 EU보다 많은 품목을 양허하고 관세 철폐 품목 수도 많았지만 EU에 양허한 육류와 육어류 조제품은 칠레에 양허하지 않았다.

노르웨이가 싱가포르에 양허한 기본농산물은 모두 400개, 가공농산물 105개 등 모두 505개를 양허하여 WTO 양허 품목 대비 36.6%로 양허율이 EU나 칠레에 비해 높았다. 관세 철폐 품목 수는 464개로 무관세 양허비율이 91.9%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류별 양허 품목 수는 8류(과일류)가 79개로 가장 많았고 20류 61개, 7류 58개로 나타났다. 관세 철폐 품목 수는 8류가 79개 전 품목, 7류 56개, 20류 56개 등이었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칠레에 대한 양허안과 마찬가지로 2류(육류)와 16류(육어류 조제품) 등이며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품목은 4류(낙농품)와 19류(곡물조제품) 등이었다. 싱가포르산 육류 또는 육가공품이 수입될 가능성은 낮지만 인접한 ASEAN으로부터의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되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인접한 유럽연합(EU)과 긴밀한 교역 관계를 맺고 있다. 회원국들 가운데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3개국은 EU와 함께 유럽 경제지대(EEA)를 구성하고 있지만 스위스는 별도의 양자 간 FTA를 통해 EU와 교역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EFTA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에 비해서는 물론 인접한 EU에 비해서도 농업경쟁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EFTA의 개방적 입장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과 금융, 서비스 등 비농업 부문의 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FTA 상대국들은 EFTA의 농산물 양허 수준이 낮더라도 비농업 부문의 시장 진입을 위하여 FTA를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EU와 체결한 농산물 양허안을 검토하고 양국이 각각 칠레 및 싱가포르에 제공한 농산물 양허 내용과 비교한 결과 EFTA의 독특한 FTA 농산물 양허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EFTA는 농산물을 FTA 본 협정의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기본농산물 양허안은 개별 회원국과 FTA 상대국간 별도의 농업 협정에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별 취약 품목에 대한 특별 고려가 가능하여 전반적인 농산물 양허율이 낮고 관세 철폐 대상 품목은 더욱 적게 나타났다.

둘째,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FTA 상대국

과 관심 품목 위주로 양허안을 작성하고 있다. EU와 치즈 교역에 관한 별도의 양허안을 교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관심 품목으로서 국내 생산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추가적인 양허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EFTA는 가공농산물을 양허하면서 가공 과정에 투입된 원료농산물 가액인 농산물 부분은 관세 철폐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 부분 산출을 위해 해당 가공농산물 품목별 원료농산물의 표준소요량을 제시하고 원료농산물의 국내외 참조 가격의 차액인 기본가액을 설정하고 있다.

넷째, 스위스와 노르웨이 모두 자국의 식량안보에 영향이 큰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된 물량만 관세 철폐 또는 관세율을 부분 인하하고 있다. 스위스는 곡물류와 곡분류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육어류 조제품과 식물성 액즙류, 식물성 섬유류, 식물성 유지류, 당류 및 곡물 조제품과 박류 등은 극소수 품목만 관세를 철폐하고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도 곡물류와 곡분 및 채유용 종자 등을 EEA에서 양허하지 않았다. 또한 육류와 낙농제품의 양허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사료용 박류와 사료첨가제, 동식물성 유지류 등에 높은 종량세를 부과하여 이들 품목의 관세 철폐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이 EFTA 주요국의 농산물 양허안을 분석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EFTA 및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EFTA와의 농산물 양허 협상에서 "양허의 균형(Balance of Commitment)"을 주장하여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와 EFTA 양측이 양허 품목 수와 양허방식의 측면에서 상호 균형을 이루어 FTA 체결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EFTA가 추진해 온 방식대로 농산물은 별도의 농업협정에서 취급하되 양측의 관심 품목 위주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FTA가 체결한 FTA 협정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허용 조항인 GATT 24조(영토적 적용,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의 8(a)항에 규정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새 substantially all the trade)"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양허율을 무리하게 높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 양허를 요청함으로써 FTA 체결의 실질적인 혜택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EFTA의 농산물 양허안은 FTA 협정상 양허방식이 "관세철폐"와 "관세철폐 제외" 뿐만 아니라 "관세율 인하"와 "TRQ 조건부 관세 유지", 그리고 "필수 농산물 함유 부분에 대한 가격보상 또는 관세 부과"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도 EFTA가 아닌 다른 국가와의 FTA 농산물 협상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양허방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 록

부표 1. 스위스의 대EU 관세철폐 대상 가공농산물

부류(HS-2 단위)	양허 세 번(HS-4 단위)	양허품목 수 (HS-4 단위)
05(동물성생산품)	0501, 0502, 0503, 0505(10), 0505(ex90), 0506, 0507, 0508(ex00), 0509, 0510	9
07(채소류)	0710(ex40), 0711(ex90)	2
09(커피와 차)	0901, 0902, 0903	3
12(채유용 종자)	1212(ex20)	1
13(수지류)	1302	1
14(식물성 섬유)	1401, 1402, 1403, 1404(10), 1404(20), 1404(ex90)	4
15(동식물성 유지류)	1505(ex00), 1516(ex20), 1517(ex90), 1518(ex00), 1520, 1521, 1522	7
17(당류와 설탕과자)	1702(50), 1702(ex90)	1
18(코코아)	1803, 1804, 1805	3
19(곡물조제품)	1903	1
20(채소 및 과실조제품)	2001(ex90), 2004(ex90), 2005(80), 2006(ex00), 2007, 2008(ex11), 2008(91), 2008(ex99)	6
21(소스류)	2101(11), 2101(ex12), 2101(ex20), 2101(30), 2102(ex10), 2102(ex20), 2102(30), 2103(10), 2103(ex30), 2103(ex90), 2106(ex10)	4
22(음료와 주류)	2201, 2202(10), 2202(ex90), 2203, 2205, 2207, 2208(20), 2208(30), 2208(40), 2208(50), 2208(60), 2208(70), 2209	7
합 계		49

자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4) 부록 2, <Table 2>.

부표 2. 스위스의 대EU 관세 추가 철폐 가공농산물

세 번(HS-8 단위)	품명	비고
19019099	맥아추출	즉시 철폐
19049020	곡물조제품	즉시 철폐
19059040	빵류	즉시 철폐
21032000	토마토 케첩과 소스류	즉시 철폐
(ex) 21039000	기타 소스류5	즉시 철폐
21041000	수프	즉시 철폐
21069010	음료베이스	즉시 철폐
21069024	음료베이스	즉시 철폐
21069029	음료베이스	즉시 철폐
21069030	음료베이스	즉시 철폐
21069040	음료베이스	즉시 철폐
21069099	음료베이스	즉시 철폐
22089099	곡물증류주	즉시 철폐
22089021	곡물증류주	발효 2년 후
22089022	곡물증류주	발효 2년 후
합 계	15	

자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4) 부록 2, <Table 4(c)> 및 <Table 4(d)>.

KREI

참 고 문 헌

송영관. 2004. “한·EFTA FTA의 경제적 효과.”『한·EFTA FTA 공청회 자료』. 외교통상부.

어명근 외. 2004.『한·EFTA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C2004-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재화. 2004. “한국과 EFTA 경제·통상 관계.” 한·EFTA FTA 공청회 자료. 외교통상부.

Complete Texts of the Agreements I CH-EU of 1999.
(www.europa.admin.ch)

Complimentary Agreement between Chile and Switzerland. 2003. “Complimentary Agreement on Trade in Agricultural Goods between the Republic of Chile and the Swiss Confederation.”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3. “Agreement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Letters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Kingdom of Norway Concerning Additional Trade Preferences in Agricultural Products Undertaken on the Basis of Article 19 of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Brussels.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4. “Council Decision of Concerning the Signature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he Swiss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EEC and the Swiss of 22 July 1972 as Regards the Provisions Applicable to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Brussels.

▣ 원고 접수일 : 2004년 5월 30일
원고 심사일 : 2005년 6월 15일
심사 완료일 : 2005년 6월 20일

KREI